



☞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

서초구 청장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

0 6 7 5 0

"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"



요금후납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문

■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주세요

- 신고 대상 : '21년 12월 결산 법인('21년 귀속 법인 소득)
- 신고·납부기한 : '22년 5월 2일(월)까지
 -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신고·납부
- 납세지 : '21. 12. 31.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
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및 이택스(<http://etax.seoul.go.kr>)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

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시 유의사항

-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
 - 단, 특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(모법인의 본점) 또는 주사무소(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)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함
 -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
-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 -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
 -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가능하며,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

■ 코로나19 피해 법인 기한 연장 안내

신고·납부 기한 연장 신청	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(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)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감면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 등의 경우 신고기한 연장도 협용 ▶ 신고·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
납부기한 직권 연장	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▶ 8. 1.(월)까지 납부, 신고는 5. 2.(월)까지

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① 과세체계 개편(독립세 전환)

- '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는 방식에서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세율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한 공제·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·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.

종 전 <부가세 방식>	변 경 <독립세 방식>
국세 결정세액 × 부가세율(10%)	과세표준 ¹⁾ ×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 - 공제·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)

¹⁾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. 단,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(21. 1. 1. 이후 신고분부터)

②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

과세표준	속산법		세법상 계산법
	세율	누진공제액	
2억원 이하	1%	-	과세표준 × 1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	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
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	2.2%	4,200만원	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
3천억 초과	2.5%	94,200만원	65억5천8백만원 + (3천억 초과 × 2.5%)

③ 세액 계산(지방세법 §103조의21)

$$\text{법인지방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} = \text{산출세액} - \text{세액공제·감면}^1) + \text{가산세}^2) - \text{기납부세액}^3)$$

¹⁾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상 공제·감면 규정 없음

²⁾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

³⁾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

④ 제출서류(지방세법 §103조의23)

구분	제출 서류	서식
신고서 ¹⁾	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43호
첨부 ²⁾	⑥ 안분명세서 (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) ⑦ 현금흐름표 (외부감사 대상 법인만)	43호의2
서류	⑧ 특별징수세액명세서 (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) ⑨ 가산세액 계산서 (가산세가 있는 법인만)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(해당 법인만)	44호의6
	⑪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(해당 법인만)	43호의5 43호의4 43호의9, 43호의10 43호의13

¹⁾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

²⁾ ②~⑥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가능하며,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